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9. 4. 5.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사업 / 마포구 공덕동 370-4		
의결번호	2019-구조4-1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〔심의 내용〕 구조안전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구조안전 분야 〉			
○ 창두께의 안전확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입주 후 발코니창 “창유리 설치시에 설계기준의 풍압력에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”라는 내용을 구조안전(구조설계)도서에 명기 바람.			
○ P16의 기초배근 상세를 보완 바람.			
○ 1PB04A부재는 장스팬에 과도한 단면(1600×900)을 적용하였으므로 span을 줄이고 단면 조정 바람.			
○ 전단차 속도를 기반암(전단파속도 760m/sec)까지의 평균속도로 재산정하기 바람.(현재는 상부 30m의 평균속도로 산정되어 있음)			
- 지반에 대한 평균 지반 특성을 분류하기 바람.			
○ 지내력을 고려한 기초설계와 지하층 구조물에 대한 부력 검토 바람. 끝.			

2019. 4. 5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